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4 | 2023.12.18 (2023.12.11~12.1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1~12.17)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기획재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확보 및 新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 유통 전 안전검사 - 사후검사) 체계 도입,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 거래소가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입법(행정)예고】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삭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농어업인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의 증설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을 대비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의 범위,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거래기록의 보존 등,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정보공개의 범위,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상시 감시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지금의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 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바꾸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일부 조항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전체로 확대하도록 전환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등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2/20(수) 10시에 예정된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정무위】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12/21), 【기재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12/19), 【농해수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12/18),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12/19), 【산자중기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12/21), 【국토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12/20) 등에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안위 법안2소위에서는 12/19(화) 14시, 재해영향평가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6
- '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기획재정부)..... 8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국토교통부) 10
-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금융위원회)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4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5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6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9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금융위원회)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25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2인) 2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2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27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27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1인) 2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1인) 2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30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3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3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3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3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3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1~12.17)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 [조세]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 관련 지침 발표
- [ES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 [소비재·유통업] 소비재·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3
- [방송통신(TMT)]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2023-12-13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 유통 전 안전검사 - 사후검사) 체계 도입
 -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 촉진
 -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 입력 의무 법제화
- ②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 지원
- ③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 강화
- ④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원)를 ‘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4년 총 736억원(‘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

< 추진 전략 >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확보 및 新산업 활성화

광물·소재·셀·사용 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산업 **쏠주기** 지원①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액의 3%) 도입
-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확대(투자액의 30 → 50%)
- IPEF(핵심광물대화체 출범, 11.16),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 강화

② 소재·셀 제조
경쟁력 강화

-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기간 대폭 단축(21→10개월)
-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③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마련('24년)
- 3단계 안전점검 체계(①성능평가-②유통 전 안전검사-③사후검사) 도입
- 재제조·재사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는 '제품'으로 인정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입력 의무 부여

④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핵심과제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 지원	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24~'28년, 1,172억원) ② 하이니켈 양극재 등 고성능 핵심소재 기술개발 ③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 환경 구축 및 기술고도화
인력 양성	① 이차전지 분야 특성화 대학 3개, 부트캠프 4개교 내외 신규 지원 ② 산업계 수요 및 프로젝트 기반 고급인력 양성
금융지원	① 광물·소재·완제품 등 쏠분야 향후 5년간 38조원+α 금융지원 ② 첨단전략산업 펀드(1조원), 공급망 대응펀드(0.5조원) 조성
이차전지 新시장 개척	① 실증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구독서비스 활성화 ②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 포함, 공공 전기이륜차 내용연수 마련 등 규제혁신 ③ 국방·항공·해운 등 전기차 外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획재정부

'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2023-12-14

정부는 '23.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2.29.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 이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의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6.30.	'22.7.1.~ 12.31.	'23.1.1. ~ '24.2.29.
		△20%	△30%	△37%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 (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그리고 '23.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4.6.30.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으로,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임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kg)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 연 탄	고열량탄 (5,500kcal~)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kcal)		46	39.1
	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kcal)		43	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함

* (영문명) Requirements to enhancing trustworthiness for AI systems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에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이 AI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AI 신뢰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은 과기정통부의 ‘국가 AI 윤리기준’(’20.12.),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22년 3종, ’23년 3종)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용범위, 특성, 시스템 생명주기 및 이해관계자 등 AI 시스템 신뢰성 구성요소와 요구사항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세부특성) 견고성, 보안성, 설명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예측가능성, 제어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회복탄력성
- ② (생명주기) 초기, 설계·개발, 검증·확인, 배치, 운영·모니터링, 지속적 확인, 재평가, 폐기
- ③ (이해관계자) AI 제공자, AI 생산자, AI 고객, AI 파트너, AI 영향대상, 관계기관
- ④ (요구사항) AI 시스템 위험관리 계획 및 수행, 수집·가공된 학습데이터의 편향 제거, AI 모델의 편향 제거, AI 시스템의 안전모드 구현 및 문제발생 알림절차 수립 등 15가지

이번 단체표준 제정으로 그동안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 저변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AI 신뢰성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TR 24028(신뢰성 개요), ISO/IEC 23894(위험관리), ISO/IEC 22989(용어)의 신뢰성 개념과 용어, 요구사항과의 내용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호환성을 확보함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단체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단체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단체표준의 내용을 분야별로 확대하여 위험 기반의 검증 항목·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표준화 단체인 ISO/IEC의 AI 그룹인 JTC1/SC42에 AI 신뢰성 신규 표준 제안과 함께 미국·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여 AI 윤리·신뢰성 관련 표준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2023-12-0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동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

-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
-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함.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 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임

③ '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출범

-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준비단은 노후계획 도시 정책 실무업무(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

④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

-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4년 초 신설할 계획임
-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함

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4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

-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4년 초 지정할 계획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REB),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회계제도 보안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

2023-12-13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 동 개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9월 규정변경 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함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연기함
- 구체적으로는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4년에서 '29년으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5년에서 '30년으로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참고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함

②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음.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함
- 다만,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되었더라도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효력이 상실됨 (부칙 제2조)

③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 *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함
-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회계 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
- *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

-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는 한편, 회계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합의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게 됨
- * (조정 프로세스(안)) ①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 ②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③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④(조정 불성립시) 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⑤ 거래소가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 그간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가 거래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 (선정 프로세스 예시) 피감기업이 용역특성,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內 3개사(잠정) 내외 선정 → 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 선정

※ 당초 규정변경예고시 지정감사를 받는 소규모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상장사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참고: '24년도 지정감사 대상 소규모 상장사 약 500개 → 소규모 상장사 전체 약 980개)

⑥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중이라도 회계부정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제도를 보완함
- 아울러, 감리전환 사실의 중복보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리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형평성을 제고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의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며, 국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을 인하하고,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 완화 (제13조의2제1호 및 제3호)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종전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내야 해당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또는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② 임업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 등 조정 (제29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제31조제1호)

-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낮추고,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퍼센트 증가한 금액만큼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농·어업인과 임업인 간의 형평을 맞추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도모함

③ 경작용 행정재산의 사용료 기준 합리화 (제29조제3항)

-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종전에는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작과 직접 관련된 지표인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사용료 산출 시 경작과 관련 없는 수입은 제외되도록 개선함

④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확대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최대 3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매각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매입을 지원함

기획재정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14 시행

수입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조장판매가격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제2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시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의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징수액에 따라 100분의 4부터 100분의 10 이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에 따른 **위탁수수료만으로는 통합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통합 징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로 위탁수수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줄어든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51조의2제5항, 제54조제2항 삭제, 별표 1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11 시행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신청하거나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청정수소의 생산량·수입량·판매량 등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등)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01-04 시행예정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

이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제15조의3제4항, 제21조, 제22조, 제31조제2항 제4호 신설 등)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시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의무만 남기고 실효성이 없는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는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정의 교육비 및 검정시험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6조의15제1항, 제16조의16제1항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예정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6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9조의2, 제9조의3)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14 시행예정

(다만, 제13조의3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및 2024. 6. 14. 시행)됨

이에 따라,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의2, 제1조의3, 제6조의2 신설, 제13조의3 신설, 제14조제1항제16호 등)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예정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확대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 요건 확대 (제5조제2항제4호)

- 종전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우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함

②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방법 마련 (제68조)

- 분쟁조정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예정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511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62조의2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예정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2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알리도록 하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8조의4제2항 제5호 신설, 제8조의8)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12.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율 상향 관련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23.4.1. ~ 12.31.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0% 상향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23.11.30)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 ②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tel:044-215-4216)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12. ~12.22.
-------	------------------	------------------------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서식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송부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44조의2제7항 및 제100조제35호의5 신설)
- ②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기부금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tel:044-215-4216)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5.
~12.18.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안 제2조의2)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 ② 발전용 천연가스(LNG)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안 제2조의2 제1항제4호라목, 제5호가·나·다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열량별로 킬로그램당 각각 41.6원, 39.1원, 36.5원으로 적용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tel:044-215-4331)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5.
~12.18.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안 제3조의2)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tel:044-215-4331)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2.
~12.21.

청소년의 정의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됨(‘24.1.1 시행/게임산업법)에 따라 **시행령 별표 내 청소년이용불가 로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내 조직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 (안 별표3)

- 청소년 정의 변경(18세 미만인 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

②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내 명칭 수정 (안 별표3)

- 별표3 내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급위원회를 현행 명칭에 맞게 각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위원회로 수정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tel:044-203-2443)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3.12.11.
~2024.01.22.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 (안 별표2)

-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의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44-201-7414, 팩스: 044-201-7351\)](tel:044-201-7414)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5.
~2024.01.11.

농어업인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의 증설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수단에 '토지이음'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장 등의 건축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 제31417호(2021.1.26.)이 일부 지자체에서 2024.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도입 (안 제84조제8항)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근교와 인접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유통에 유리하나 낮은 건폐율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설치 규모가 제한됨
- 관할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의 건폐율을 40퍼센트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②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 추가 (안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으로 지자체 공보·홈페이지, 주요 일간지 등이 활용되고 있음
-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접속가능한 '토지이음'을 공고수단에 추가하여 주민 접근성·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9, 팩스: 044-201-5569)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2.
~2024.01.22.

등재특허권의 무효 또는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받아 동일의약품에 우선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65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 미보고 등 과태료 기준 마련 (안 별표3)

-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을 약사법 시행령에 추가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tel:043-719-2621)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3.12.11.
~2024.01.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자산의 범위 (안 제2조)

-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 토큰,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②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안 제5조)

-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

③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안 제6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④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안 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규정

⑤ 거래기록의 보존 등 (안 제8조)

- 거래 종류, 수량, 금액 및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를 규정

⑥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정보공개 범위 (안 제9조)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정되는 방법과 그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

⑦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안 제11조)

-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⑧ 상시 감시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 (안 제12조)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해야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tel:02-2100-2534) (전화: 02-2100-2534, 팩스: 02-2100-254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4.
~2024.01.0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 (안 제384조제8항)

-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

②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안 제384조제8항)

- 포상금 지급한도를 20억에서 30억으로 변경

③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함 (안 제384조제1항, 제2항)

- 불공정거래 신고시 따라야 할 기준 중 제3호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을 삭제하여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tel:02-2100-2579) (전화: 02-2100-2579, 팩스: 02-2100-254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2023-12-13 발의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의 원인이 크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중용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2인)

2023-12-15 발의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적용되는 소송제도로 소액·다수의 피해자의 손쉬운 피해 배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집단소송을 의식한 불법행위 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가능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만 한정돼 있음. 남소와 이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임. 도입 초기의 우려와 달리 200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0건에 불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은 단 두 건에 불과함. 즉, 남소 우려에 입각한 증권집단소송 도입 반대 논리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따라서 지금의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 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금융관련 소액·다수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수월하게 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바꾸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일부 조항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전체로 확대하도록 전환하고자 함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2023-12-11 발의

최근 몇 년간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노무비, 전기요금 등 경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예를 들어 금형(金型)·주조(鑄造)·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총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원사업자가 추가 하도급거래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비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제16항·제17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2023-12-13 발의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킵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2023-12-13 발의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킵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6항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2023-12-14 발의

현행법은 금융과 IT·모바일 등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동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지정기간(2년 이하로 지정하되, 한 차례만 2년 이하 연장 가능함) 동안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에 특허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금융회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더라도 우세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장기화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현행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침해로 「특허법」에 따른 침해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4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죄를 저지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의원 등 11인)

2023-12-14 발의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 · 중기 · 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단기 · 중기 ·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규명하도록 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 · 공시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9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1인)

2023-12-15 발의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로 세무당국이 법인의 운행기록 작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2023-12-13 발의

최근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고령층·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비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비교·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또한, 이용자가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통신사가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안 제32조의1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안 제32조의10 신설)**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안 제32조의11 신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망, 폐업 등 이용자의 지위변동에 대한 확인과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안 제32조의4제3항 신설 및 제32조의4제5항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2조의5제4항 신설),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0조의2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하여 (안 제104조제6항 개정)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범주가 디지털 콘텐츠·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조제3항 개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2023-12-13 발의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23-12-14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등에게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 552건의 피해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2023-12-13 발의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3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2023-12-14 발의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을 채취·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상의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의 인체세포를 채취·검사하여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다만 해당 행위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로서, 의료기관이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2023-12-15 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2013년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현재 심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 등의 위탁계약에 의한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거해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 않음

다시 말해 보험회사 등이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등)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2/20(수) 10:00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2/18(월) 11:00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안1소위	12/18(월) 산회후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12/19(화) 10:00	- 타위법 심사 등
	전체회의	12/19(화) 14:00	- 법안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12/21(목) 10:00	- 국무위원 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실시
기재위	전체회의	12/19(화) 10:00	- 국무위원 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회 실시
과방위	전체회의	12/18(월) 10:00	-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행안위	법안1소위	12/18(월) 14: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12/19(화) 14:00	- 재해영향평가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20(수) 10:00	- 법안 의결
문체위	전체회의	12/19(화) 14:00	- 법안 의결
농해수위	전체회의	12/18(월) 10:00	- 국무위원 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사청문회 실시
	전체회의	12/19(화) 10:00	- 국무위원 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회 실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2/21(목) 10:00	- 국무위원 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회 실시

복지위	법안1소위	12/18(월) 10: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12/19(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20(수) 10:00	- 법안 의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12/18(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22(금) 11:00	- 법안 의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2/19(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20(수) 10:00	- 국무위원 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
	전체회의	12/21(목) 10:00	-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국토법안소위	12/21(목) 산회후	- 법안 심사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12/20(수) 10:30	- 결산 의결
	전체회의	12/20(수) 11:00	- 결산 의결
정개특위	법안제2소위	12/18(월) 10:30	- 법안 심사
	법안제1소위	12/18(월) 15:3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8(월) 10:00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강민정·도종환· 서동용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18(월) 10:00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	김미애·한정애·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8(월) 10:00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토론회	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실
	12/18(월) 14:00	(한국-이디오피아 국교수교 60주년 기념) 한국-이디오피아 환경 포럼	우신구·노용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12/18(월)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성원 의원실, 한국행정학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8(월) 14:00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 토론회	강선우·고용진· 김민석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2/18(월) 14:00	위기 청소년과 형사 채무자의 사회적 가치회복을 위한 치유농업 세미나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18(월) 14:00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개 선방안 정책 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한국장애인재단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18(월) 14:00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19(화) 10:00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세미나	유상범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19(화) 14:00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성과보고회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9(화) 14:00	한국 골프산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20(수) 10:00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김예지·윤재옥· 김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20(수) 15:00	학생 건강증진과 법률 이행을 위한 보건과 추진 방안 토 론회	신현영 의원실, (사)보건교육포럼	의원회관 5간담회실
	12/21(목) 10:00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3차 -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21(목) 10:00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동만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12/18(월)	「팩트북」 제107호 발간 - 재난안전관리	국회도서관	
	12/20(수)	「금주의 서평」 제658호 발간 - 도서명 : 자연에 이름 붙이기 - 저 자 : 캐럴 계속 윤		
	12/20(수)	「NABO 재정동향&이슈」 제23호(2023년 제2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2/20(수)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발간		
	12/21(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5호 발간		
	12/22(금)	「NABO 경제동향」 제40호(2023년 제6호) 발간		
	12/19(화) 16:00	「민사와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12/18(월) 15:00	2023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수료식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4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1(월) 10:00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국회포럼	지성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1(월) 14:00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12/12(화) 10:00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12/12(화) 14:00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2(화) 14:00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학술회의 - 정당 혁신의 방향	최형두·김한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12/13(수) 10:00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13(수) 10:00	지구촌새마을운동 학술세미나	이만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13(수) 10:00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	이주환·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3(수) 13:30	2023 경상북도 SUPER 화공 포럼 개최 - 은퇴 과학자 활용방안 마련하다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3(수) 14:00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정책방안 마련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2/14(목) 10:00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2차 - 의대정원 확대에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14(목) 14:00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5(금) 10:00	한·중·러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박병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12/13(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3. 11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12/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8호(2023-26호) 발간 -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국회도서관	
	12/13(수)	「Data & Law」 2023-12호 발간 - 호명: 데이터로 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12/6(수)	「금주의 서평」 제657호 발간 - 도서명 : 집단 착각 - 저 자 : 토드 로즈		
	12/13(수) 13:30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혐오와 차별의 미래: 이머징 시티즌과 함께 가는 사회적 혁신의 길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전략 정보센터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1.~12.1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11(월)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12/12(화)	조세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 관련 지침 발표
12/14(목)	ES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12/15(금)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3
12/15(금)	방송통신(TMT)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